용역입찰 유의서

-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세종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5. 인감증명서 1부
 - 6.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 7. 가격입찰서(견적서) 1부
 - 8. 제안서(평가를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 한함) 요청 부수
 - 9.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 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2단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규격, 성능 등) 심사를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격 적합 판정을 득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본교의 입찰참가자격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3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입찰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이후

-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 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 ③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중 사전 공개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 2. 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 4.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 5.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6. 표준계약서(소정양식)
 -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5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벽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다.
 -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그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

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제16조제1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어 당해 낙찰이 무효로 된 경우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본교의 자금 집행 절차 에 따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 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④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 며 입찰자(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등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 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본교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단, 견적입찰인 경우 참여 업체의 견적서로 대신할 수있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본 입찰과관련된 모든 제반비용(설치비, 시운전비, 포장 및 운송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 금액을 본교에청구할 수 없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 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 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작성)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기하여 야 한다. 단, 외자 입찰의 경우 수입물품은 원산지 통화(예/ US\$, ¥, £, EURO 등)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취소가 가능하다.

- 제10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 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 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 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 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 료 후 입찰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 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②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 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 착하지 아니한 입찰
 -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 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 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 한 입찰
 -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 는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의 입 찰

-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 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전자입찰 제외)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 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 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 찰
-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입 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및 입찰서 제 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 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 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 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 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 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평가(기술,규격 검토, 제안서)를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 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 등의 입 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대상자가 제출한 입찰서, 실적 등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무효 등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찰(우선협상대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 자는 재공고 입찰을 하거나 차점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본교로부터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 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 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제19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 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를 준용하 며, 기타 사항은 본교 해석에 의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세종대하교(이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발주자 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 내역서, 입찰유의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 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 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 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 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 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 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 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 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 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 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④제3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 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 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화 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 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 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과 제5항을 준 용한다.

⑥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발주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 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 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 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

한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 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 닦으로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 (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 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 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발주자와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할 때
 - 2.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 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3.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의 각 조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 4.계약상대자가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 거나 이행한 용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 하였을 때
 - 5.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의 각 조를 위 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수수 또 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 실이 발견된 때
 -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발주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 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발주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 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 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 한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아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 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한 계 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 다.

②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 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 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 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 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 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 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하되, 계약 상대자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상관례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